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894 발의연월일: 2025. 4. 16.

발 의 자:이종욱·신영대·최은석

이인선 • 서천호 • 박덕흠

박수민 • 박정훈 • 박정하

김도읍 • 안도걸 • 박수영

정연욱 · 강준현 · 신성범

김기표 의원(16인)

제안이유

현재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질서의 구조적 변화 흐름에 직면하고 있으며 경제안보 중심의 공급망 재편은 지속·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리스크가 커지고 있어 공급망 안정이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한 핵심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정부는 지난해 9월 수출입은행에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공급망안정화사업을 추진하는 기업들에게 대출, 보증,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기금의 재원이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의 발행 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자금으로 한정되어 있어 공급망 위기 예방·대응을 위한 긴요한 자금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그 근거

를 마련하고, 출연금을 활용한 공급망 핵심사업 투자, 대출이자 지원 등을 통해 공급망기금의 지원 효과를 제고함으로써 공급망 위기 산업 에 대한 지원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안정화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출연 근 거를 마련함(안 제18조 개정).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종욱의원·신영대의원이 대표발의한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895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 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업무) ① (생 략)	제18조(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수출입은행은 제1항 각 호의	②		
분야에 따른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u><신 설></u>	9. 공급망안정화기금 운용을 위한		
	자금의 출연		
<u>9</u> . · <u>10</u> . (생 략)	<u>10</u> . • <u>11</u> . (현행 제9호 및 제10호와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